# 소위원회 운영세칙

제 정 2006. 3. 24 개 정(1) 2006. 4. 18

개 정(2) 2016. 6.24

개 정(3) 2022. 5.25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법(이하 "법"이라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투자공사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운영위원회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위원회의 구분) ①소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와 임시소위원회로 구분한다.

②상설소위원회는 공사의 자산운용업무의 적정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「투자소위원회」와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 적정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「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」로 한다.

③임시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업무의 위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성한다.

- 제3조(구성) ①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 - ②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  - ③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해 의안에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- 제4조(임무) ①투자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- 1. 투자정책의 수립 및 변경
  - 2. 연간 투자운용계획의 수립
  - 3. 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투자 관련 사항
  - ②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.

- 1. 리스크관리 정책의 수립 및 변경
- 2. 연간 리스크관리 계획의 수립
- 3. 연간 투자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
- 4. 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
- 5. 감사규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
- ③임시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하거나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조사·보고업무를 수행한다. 임시소위원회는 심의종결 결과를 운영위 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된다.
- 제5조(위원장) ①소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소위원장"이라 한다)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며,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.
  - ③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 소집) ①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소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- ②소위원장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회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*제7조(의결)** ①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- ③소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면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소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의견진술)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9조(의사록) ①소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 사록을 작성하고 소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한다.

- 1. 개회, 회의의 중지, 산회의 일시
- 2. 회의장소
- 3.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
- 4. 회의의 결과
- 5.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소위원회 사무보좌)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사내 해당부서가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.
- 제11조(심의결과의 보고) 소위원회는 직후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제9조에 따른 의사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수당)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범 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그 대리위원이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4조(시행세칙)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